

담양군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10. 13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담양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군수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
나.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(안 제4조~제5조)

다.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라.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마. 토종농작물의 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바. 토종농작물의 교육·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사. 토종농작물의 지원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6. 10. 13. ~ 10. 18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6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토종농작물"이란 담양군에서 예로부터 자생하거나 재배되어 온 것으로 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 담양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.
2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3. "농업인 등"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 관련 법인·단체로서 담양군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담양군민은 토종농작물이 농업의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,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존·육성계획의 수립)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계획(이하 "보존·육성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토종농작물의 조사·관리·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

2.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보존·육성에 관한 사항
3. 토종농작물의 지원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4. 토종농작물의 소비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보존·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·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해제)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에 대하여 토종농작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종농작물이 자생력을 상실하거나 보존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의 기준·절차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 지원)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토종농작물의 종자 확보 및 보급 사업
2. 토종농작물 생산·유통 및 재배기술 지원 사업
3. 토종농작물 관련 교육·홍보 및 브랜드 육성 사업
4.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,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지원 신청 및 재배계획서 제출)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은 토종농작물 재배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유통 및 소비 촉진)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토종농작물 가공품의 개발 및 상품화 지원
2. 직거래장터·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한 유통망 구축
3. 토종농작물을 활용한 지역축제 및 홍보행사의 개최·지원
4. 그 밖에 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(교육·홍보 및 체험프로그램)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가치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토종농작물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
2.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
3. 홍보물의 제작·배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4. 그 밖에 교육·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1조(지원의 취소 및 환수)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2.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3. 그 밖에 지원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
제12조(관계 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·교부·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